회수 · 인계 · 재활용 의무 대상: 모든 전기 · 전자제품

※ 비대상 제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시행 2026. 1. 1.)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시행령 |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제외 전기 · 전자제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 "태양광 패널"이란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하여 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 제외 전기·전자제품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시행 2026. 1. 1.)「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1.「군수품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비품(戰備品)**

2.「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으로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

➥ 별표 가목~마목까지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별표]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의 인정기준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관련)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전자제품을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이하 "대형기기·설비"라 한다)로 인정한다.

가. 여러 종류의 기구나 장치를 **서로 조립 또는 결합하여 하나의 설비**로 제작됨

나. 대형기기·설비를 조립, 설치 및 해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

다. 일정한 공간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기나 설비

라. 대형고정설비의 경우 동일하게 제작된 **특수기기로만 교체**가 가능한 경우

마. **기업간 거래(B2B)인 경우**

2. 대형기기·설비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 인정기준
가. 여러 종류의 기구나 장치를 서로 조립 또는 결합하여 하나의 기기나 설비로 제작	1)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 중량이 2톤 이상이고 크기가 15.625㎥ 이상 (예시: 2.5m × 2.5m × 2.5m)인 기기 2) 대형고정설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공사, 인입공사 등의 구조물 개선 작업이 수반되는 설비 가) 설치 또는 해체를 위해 운반할 때 부분품의 총합이 ISO20 컨테이너(5.9m × 2.35m × 2.39m)보다 큼 나) 설치 또는 해체를 위한 운반시 대형화물트럭(25톤) 1대를 초과 다) 설치 또는 해체를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형크레인이 필요 (1)「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기중기로서 들어올림능력이 25톤 이상이고 작업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것 (2)「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타워크레인으로서 최대정격하중이 25톤 이상이고 작업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것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의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에 크레인 장치를 부착한 경우 들어올림능력이 25톤 이상인 것 라) 제품의 정격출력이 375kW 이상

나. 대형기기·설비를 조립, 설치 및 해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	1) 관련 전문가란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훈련을 받았거나 숙련된 기술자 2) 조립, 설치 및 해체 작업에 각각 동등한 수준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철거업체에 의한 해체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다. 일정한 공간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	1)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기나 설비 2) 제품의 기능 구현 등을 위해 최초 설치장소에서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고정된 레일 위에서 이동하는 등의 이동성을 갖춘 경우에는 고정된 것으로 인정
라. 대형고정설비의 경우 동일하게 제작된 특수기기로만 교체가 가능한 경우	1) 교체가 필요한 경우 특별히 맞춤식(설계, 크기, 구조 등)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2) 표준화 제품이거나 맞춤식으로 제작되지 않은 제품(a)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대형기기·설비(b)에 결합될 경우, 해당 제품(a)은 대형기기·설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음
마. 기업 간 거래인 경우	1) 기업 간 거래(B2B)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형태의 기기나 그 부품은 해당하지 않음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일부로서 영구적 사용을 목적으로 전문공사업자가 설치하며,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해체(멸실공사 포함)해야만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기계·기기·기구, 장비, 설비 및 기자재 등(이하 "기기류"라 한다.)

가.「기계설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계설비**(다만, 에어컨디셔너(벽걸이형·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공기청정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P.6 [참고1]

나.「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에 의해 설치되는 **전기설비**(다만, 태양광패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P.7 [참고2]

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라.「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및 부대공사를 통하여 설치되는 설비** → P.9 [참고3]

3. **다음 각 목의 해당 업 사업자가 처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기·전자제품**

가. 건설업 사업자가 운용하는「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나. 농업 사업자가 운용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다. 제조업 사업자가 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1)「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동법 제8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이 되는 기계**,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의 기계장치**

라. 「원자력안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마. **전문적인 용도로 작업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비도로용 이동기계**

4. 기초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시험·측정·분석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연구 장비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나. 연구 및 시험외의 용도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

5. **연구용 제품의 견본품 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시제품**(다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해 자체 사무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다만,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일반 소비자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염의 우려로 재활용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인 의료기기**

2.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및 「체외진단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및 4등급(고도의 위해성) 의료기기**

➥ **"식약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3호「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별표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참고"**

④ 영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적인 전기·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1. **주기능이 전기·전자제품이 아닌 제품**(가구류(안마의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발류 등)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기·전자제품

2. **수리 및 교체 등을 위해 별도로 판매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

<참고>
- 부분품 : 제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
- 부속품 : 제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

참고: 품목 예시 및 사진

비대상 제품에 장착된 전기·전자제품

[비대상] 장착된(내장형) 내비게이션/디스플레이/오디오 등

[대상] 별매용 내비게이션/오디오 등

수리 및 교체 등을 위해 별도로 판매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

[비대상] (비전기) 전자밥솥 내솥, TV/모니터 거치대, 냉장고 도어/선반 등

[대상] 리모컨, 충전기/어댑터 등

태양광 패널/자가 발전(무전원) 전기·전자제품

[대상] 태양광 계산기, 태양광 라디오 등

[대상] 자가 발전(무전원) 손전등, 라디오, 발전기 등

가구류, 신발류

[비대상] 전기온돌침대, 콘센트 내장 책상, 스피커 내장 소파, 조명 내장 침대 프레임, LED 신발 등

전지(배터리), 전지 제품

[비대상] 교체형 배터리, 승강기 배터리 / [대상]보조배터리, 파워뱅크, ESS 모듈 등

기타 대상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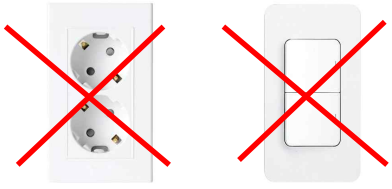

[비대상] 콘센트, 스위치 / [대상] 멀티탭, 케이블, USB 저장장치, 전동 완구류 등

참고자료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관련)

구분	내용
1. 열원설비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2. 냉난방설비	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4.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온수 공급, 오배수(汚排水), 오배수관 통기(通氣)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5.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6. 우수배수설비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7. 보온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8. 덕트(duct)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給氣)·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9. 자동제어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10. 방음·방진·내진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11. 플랜트설비	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의 제조·생산·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12. 특수설비	가. 건축물등에서 냉동·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나.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氣送管: 압축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참고자료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1. 29.>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전기공사의 종류	전기공사의 예시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가. 발전설비공사	발전소(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열병합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의 발전소를 말한다)의 전기설비공사와 이에 따른 제어설비공사
	나. 송전설비공사	1) 공중송전설비공사: 공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철탑기초공사 및 철탑조립공사(지지물설치 및 철탑도장을 포함한다), 공중전선설치공사(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횡단개소의 보조설비공사, 보호선·보호망 공사 2) 지중송전설비공사: 지중송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3) 물밑송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4)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궤도·자동차도·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다. 변전설비공사	1) 변전설비기초공사: 변전기기, 철구, 가대 및 덕트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 2) 모선설비공사: 모선(母線)설치(금구류 및 애자장치를 포함한다), 지지(支持) 및 분기개소의 설비공사 3) 변전기기설치공사: 변압기, 개폐장치(차단기, 단로기 등을 말한다), 피뢰기 등의 설치공사 4) 보호제어설비설치공사: 보호·제어반 및 제어케이블의 설치공사
	라. 배전설비공사	1) 공중배전설비공사: 전봇대 등 지지물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가선공사(수목전지공사를 포함한다) 2) 지중배전설비공사: 지중배전설비공사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 공동구 안의 전기설비공사, 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 변압기 등 전기기기설치공사, 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선방재설비공사를 포함한다) 3) 물밑배전설비공사: 물밑전력케이블설치공사 4) 터널 안 전선로공사: 철도·궤도·자동차도·인도 등의 터널 안 전선로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가.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1)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산업설비를 말한다) 등의 전기설비공사 2)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를 포함한다)공사
	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 수전·변전설비공사[큐비클(전기 기기, 수전·변전 설비 등을 둘러싼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비전원설비공사(비상용 발전기, 축전지, 충전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연료전지, 정류장치의 설비공사를 말한다) 및 보호·제어설비공사 2) 전원공급설비공사: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배관(덕트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등의 설비공사

		3) 전력부하설비공사: 조명설비(조명제어설비를 포함한다), 콘센트 등 기계·기구 및 동력설비의 공사 4) 운송설비공사: 이동보도(무빙워크),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동 소형물품 운반용 승강기, 권상용(물건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한 용도를 말한다) 모터, 궤도, 운반차량, 컨베이어, 공조(덕트ㆍ시스템ㆍ설비), 곤돌라, 케이블카 등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하게 하는 운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 5) 방재 및 방범 설비공사: 서지보호설비[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낙뢰설비, 잡음·전자파(EMI, EMC, EMS 등을 말한다)의 방지설비공사, 항공장애등설비공사, 헬리포트조명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전기공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6) 지능형 빌딩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7) 지능형 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 8) 약전설비공사: 전기시계설비, 시보설비, 주차관제전기설비 9) 그 밖에 건축물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10) 삭제 <2016. 12. 30.>
	다.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 전식방지공사: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공사 2) 동결방지공사: 제설·제빙용, 바닥난방용, 동파방지용,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설비공사 3) 신호 및 표지 설비공사: 네온사인, 큐빅보드, 광고표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4) 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공사와 그 밖에 구조물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가. 도로전기설비공사	1) 가로등설치공사: 가로등, 조경등, 보안등, 신호등, 터널등의 설치공사 2) 터널설비공사: 터널조명설비공사와 터널방재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3) 그 밖에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나. 공항전기설비공사	1) 「항공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한 전기설비공사 2) 그 밖에 공항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다. 항만전기설비공사	1) 조명타워공사 및 등대 등의 전기설비공사 2) 그 밖에 항만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 설비공사	가. 전기철도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수전선로설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전선로의 설치공사, 전차선설비공사, 역사전기설비공사
	나. 철도신호설비공사	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 정지장치, 열차집중 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제어기설치공사
5.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1) 전기기계·전기기구(발전기, 변압기, 큐비클, 배전반, 조명탑 등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2) 조광설비공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공사 3) 주변전실 및 부변전실의 보호·제어를 위한 설비공사 4) 유입케이블 또는 가스절연 송전선 등의 계측 및 보호를 위한 전기설비공사

		5) 하천변, 유원지, 교각, 빌딩, 고궁 등의 무대조명 및 경관조명을 위한 설비공사 6) 전력설비의 내진·방재(소음·진동·화재 방지를 말한다)·계측 및 보호를 위한 설비공사 7) 건축용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 8) 전기충격울타리 시설공사, 전기충격살충기 시설공사, 풀용 수중조명 시설공사, 분수의 조명 시설공사 9) 그 밖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

참고자료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공사의 종류	공 사 의 예 시
통신설비공사	통신선로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봇대·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PBX·CBX)설비 등의 공사
	전송설비공사	전송단국(FLC·PCM·PDH·SDH·DACS·SONET·WDM)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GMPCS)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설비, 위성뉴스중계(SNG)설비 등의 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방송설비공사	방송국설비공사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봇대·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
정보설비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

		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 등의 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	무지향표식(NDB)설비, 전방향표식(VOR)설비, 거리측정(DME)설비, 계기착륙(ILS)설비, 로란 및 레이다(ASDE·ASR·MSR)설비, 전술항행(TACAN)설비, 위성항행(CNS/ATM)설비,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LLWAS), 소음측정시스템,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종합정보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VTS 및 해안지역 각종 통신시설)설비 등의 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설비공사	선박통신설비(GMDSS, 조난구조장치, MF·HF·VHF·SSB의 송수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 등), 선박항해설비(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치, RDF, 측심기, NAVTEX,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파스, 자동조타장치 등),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어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치, 조류계 등) 등의 공사
	철도통신·신호 설비공사	역무자동화(AFC)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HP)설비,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 공사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전류·전압 등이 순간적으로 크게 증가할 때 증가한 전류·전압으로부터 시설 등을 보호하는 설비를 말한다),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